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7. 3. 12.  
행정재무위원회

## 1. 審 査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7년 2월 18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7년 2월 20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4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97.3.12) 상정 의결

##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윤정중)

### 가. 제안이유

- 현재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제도는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다음 해에 다시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에 구청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확인 기간동안 진료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진료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97. 1. 11.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제도 개선 지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제1항 별표에 “의료보호증 재사용확인”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 신설

## 3. 專 門 委 員 의 檢 討 報 告 要 旨 (전문위원 : 허 영 훈)

동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 재책정시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의 구청장 권한을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동조례 제5조 제1항 별표의 사무명란에 제16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행정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다음해에 다시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 원거리의 구청에 오지 않고 주거지의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받아 의료보호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진료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행정권한 위임의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됨.

## 4. 審 査 結 果 : 원 안 의 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0
----------	-----

제출년월일 : 1997년 2월 18일  
제 출 자 : 영 등 포 구 청 장

## 1. 개정이유

현재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제도는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다음 해에 다시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에 구청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확인 기간동안 진료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진료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97. 1. 11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제도 개선 지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제1항 별표에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및 근거

-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의료보호증의 유효기간 등)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사무의 위임)
- 보건복지부 65730-34('97. 1. 11)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제도 개선지시

나. 합 의 사 항 : 없음

다. 예 산 조 치 : 필요없음

라. 개정조례(안) : 별첨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위임사무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동 장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1 - 15. (생략)			1 - 15. (현 행과 같음)		
( 신 설 )			16. <u>의료보 호증 재사용 확인</u>	<u>의료보호법 시행규칙제6 조제2항</u>	동 장